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 : 남인순 · 김원이 · 서영교

김용민 · 백승아 · 장종태

전진숙 • 윤준병 • 박지원

민홍철 · 김남희 · 백혜련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 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 고자 하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 7항 신설).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2.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의 개시일은 같은 항 각 호의 휴가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개시일을 변경한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제4호 중 "제4항"을 "제4항·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육아휴직) (1 ~ 5	(생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
			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
			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7
			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
			<u>가를 사용하는 경우</u>
			2.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u>사용하는 경우</u>
<u><신 설></u>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의
			개시일은 같은 항 각 호의 휴
			가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개시일을
			변경한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u>⑥</u> (생 략) 제37조(벌칙) ① ~ ③ (생 략)

-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 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 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 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 6. (생략)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u>⑧</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4항 • 제6항</u>
5. · 6. (현행과 같음)